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229347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6. 2. 5.

판결 선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4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17.까지 연 6%의, 2015. 9. 18.부터 2015. 11. 16.까지 연 9%의,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3. 11. 접수 제7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2015. 4. 17.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과 피고 E 사이에 2015. 7. 1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15. 4. 20. 접수 제37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15. 7. 21. 접수 제7256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로 구한 부분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10. 17.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화(이하 '신화'라 한다), 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신화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6.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신화가 2015. 7. 21.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8,849,44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8. 신화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5. 3. 10.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3. 11. 접수 제710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5. 4. 20.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5. 4. 1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15. 4. 20. 접수 제374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피고 E에게 2015. 7. 14.자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15. 7. 21. 접수 제72563호로 전세금 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계약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전세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 피고 B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에 기하여 마쳐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다만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금원 지급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약 3개월 경과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B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은 2015. 3.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아 차용증서를 받고 운영자금 1억 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3. 10.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창원시 성산구과

창원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피고 B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을구 4번 및 8번으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 앞으로 2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70,207,583원)도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 C는 피고 B를 소개받은 과정, 자금조달 방법, 대여 경위, 이자 수령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회사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이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마 1호증의 6, 을마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5. 7. 14. 피고 B 앞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체납관리비 중 11,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을마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 때였던 점(피고 E도, 당시 피고 회사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피고 E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게 전세금을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도 아닌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체납임금 12,616,000원 및 체납관리비 38,714,727원을 대신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그리고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 E이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위 30,000,000원, 체납임금 12,616,000원, 체납관리비 중 11,000,000원으로 전세금 8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특히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같은 부동산에 이미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거액의 전세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④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이전에 피고 B이 피고 E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드러났는데, 피고 E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희록

별지